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고,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17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